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어르신장애인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어르신장애인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을 마련하고자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을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
- 「지역문화진흥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및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은 달서구 상화로21길 77에 소재하며, 월배노인종합복지관 4층, 연면적 969㎡로 2026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등이 있습니다.
- 생활문화센터(월배점) 주요 사업은 생활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생활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 육성·지원, 체험·창작 활동 지원 등이며,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고 복지와 문화를 연계한 다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문화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2025년 9. ~ 10월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접수하고, 2025년 11월 중 수탁기관을 심사 및 선정하여 2026. 1. 1. ~ 2030. 8. 10.까지 4년 8개월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사업비는 연간 총 6천만원 정도입니다.

※ 사업비 총 2억 9천 정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생활문화센터(월배점)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교류, 창작활동의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094
----------	----------

제출일자: 2025. 9.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달서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을 마련하고자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을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
- 「지역문화진흥법」,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 1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 필요성

-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 교류, 창작활동의 중심이 되는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여가 공간 필요
-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의 복합공간으로 세대간 교류 및 복지와 문화를 연계한 다층적 서비스 제공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대관 등 행정업무 전반
-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간 교류,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주요시설)	비고
달서생활문화센터 (월배점)	상화로21길 77 (진천동)	·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969㎡ (※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내 4층) · 시설: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등	월배노인 종합복지관 (지하층~지상3층)

마. 위탁기간: 2026. 1. 1.~2030. 8. 10.(4년 8개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적정 의견
 -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절
 - 생활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수행 관련 다양한 자원이 축적된 민간기관에서 구민의 문화 생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2 참조

다.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위탁 추진 계획: 붙임 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 9.~10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10.~11월
- 선정결과 공고 : 2025. 11월
- 위탁계약 체결 등 : 2025. 11월

□ 지역문화진흥법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검토내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수행 관련 다양한 자원이 축적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문화 생활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 · 전문분야의 문화 분야를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기 보다 사무의 민간 위탁을 통해 국민의 문화 생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함. ·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민간 사무 위탁이 필요함.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수행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의 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자체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측정기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 제공 관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은 충분한 경쟁이 가능함. ·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으며, 민간 사무 위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거점공간인 달서생활문화센터 월배점이 신규 개소 예정임에 따라 공익,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생활 문화센터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II 추진방향

- 문화·예술·커뮤니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의 복합공간으로 세대간 교류, 복지와 문화를 연계 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생활문화센터의 예술·동아리 활동과 복지관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다층적 서비스 제공 및 시설 활용 극대화

III 위탁계획

□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주요시설)	개소(예정)
달서생활문화센터 (월배점)	상화로21길 77	·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969㎡ · 시설: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등	2026. 1월

※ 생활SOC사업 추진으로 복합문화 공간 조성(월배노인종합복지관, 생활문화센터 등)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8. 10.(4년 8개월)

※ 민간위탁기간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

○ 위탁금액: 연 6,000만원 정도

※ 운영인력: 1명(기간제근로자)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위탁사무

-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대관 등 행정업무 전반
-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간 교류,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절차



□ 신청자격

- 생활문화·예술·평생교육 관련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위탁사무 및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제외대상으로 확인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I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근 거: 2025. 8. 11.(월)~8. 18.(월)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환경 분과 위원 서면자문 검토
- 검토결과: 【붙임 1】

□ 區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근 거: 2025. 9. 15.~9. 19.(제314회 임시회)
- 내 용: 민간위탁 추진 區 의회 사전 동의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구 홈페이지 공개모집 ※ 공고문안 【붙임 2】
- 공고기간: 2025. 10월(15일간)
- 접수기간: 2025. 10월(공고기간 종료 후 3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하였을 경우 재공고: 7일간
- 접 수 처: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1층, 노인정책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 우편·택배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구 성: 6~9인 이내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관련 업무 공무원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 기: 10.~11월중
- 위원임기: 심사 후 자동해산

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1월중 / 장소 미정
- 참석대상: 심사위원
- 심사내용: 접수된 수탁기관 심사·선정

심사 및 선정

- 근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 ▶ (2차) 대면심사(정성평가):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개별심사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이 높은 기관
 -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배점표에 따른 심사에 따라 선정
- 결정통지: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 심사기준(안)

심사부문	심사항목	배점
신청자(법인·단체) 적격성	정관 등 설립목적과 시설운영과의 적합성	10점
	신청기관의 공신력, 지역사회기여도 등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문화사업 및 유사사업 운영실적	20점
	최근 3년간 관련 공모사업 수행 실적, 수상 실적	
사업운영계획	운영방침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	70점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이행가능성	
	조직 및 시설관리, 예산운용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운영의지 및 지역사회와 연계, 기여방안 등	

□ 위·수탁 계약체결 ▶ 별도계획 수립

-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일시: 2025. 11월중
- 주요내용: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 위반시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

V 행정사항

- 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25. 8월 중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9. 1.(월) 限
- 위탁운영 법인(단체)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5. 10월 중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2025. 10.~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 11월 중